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0

수 원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137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63967 판결
변 론 종 결	2020. 3. 25.
판 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8,648,490원 및 그 가산세 15,808,4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0

원, 지방교육세 9,864,840원 및 그 가산세 594,3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은 제1심판결문이유 제1.의 다.항의 첫 번째 문장(제3면 5행부터 7행까지)을 "다. 한편 C은 2014. 12. 11.자 가선건축물 축조신고를 거쳐 이 사건 부지에 임시창고 용도의 강파이프/천막 구조 가설건축물 2동(각 건축면적 175.79m², 69.3m², 최초 존치기간은 2016. 12. 10.까지였는데, 2016. 12. 8.자 J장의 연장신고 수리에 따라 2019. 12. 10.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쟁점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원고가 설립된 이후로는 원고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감면조항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0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위와 같은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지나 현물출자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물출자의 경우 위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전환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현물출자 당시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은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 관한 것으로서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쟁점 가설건축물은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기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임시창고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에 의하여도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되고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현물출자에 대한 계약서나 재산평가보고서, 감정평가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등 현물출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고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자본금은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쟁점 가설건축물 평가액 상당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일응 원고의 설립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쟁점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라 2014. 12.경 건축된 것으로서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이미 존치기간이 1회 연장된 상태였고, 그 존치기간이 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0

2년 정도 남아 있었던 점, 쟁점 가설건축물은 그 존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그 기간 만료시에 철거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쟁점 가설건축물을 임시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B에게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점(그 재산세를 원고가 납부하고 있어 이를 사용대가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는 피고가 위 재산세의 납세고지를 원고에게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물출자 대상에서 쟁점 가설건축물이 제외된 것은 단지 그 존치기간 만료시에 철거되어야 할 것이어서 현물출자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이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를 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 중 일부를 현물출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판단에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객관적인 사정으로도 뒷받침된다면,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에서도 제외함으로써 이 사건 감면조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쟁점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의 경위, 존치기간과 연장신고의 시점, 향후의 철거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가설건축물이 이 사건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된 데에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이로 인해 사업의 동일성이 해하여 진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현물출자에 의한 원고 설립의 경우 원고의 자본금이 법인 전환으로 소멸하는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설립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0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